

## 항 고 장

불기소사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 형제 6685호

항 고 인 : 고발인 이수정, 박근용 (참여연대 간사)

참여연대 대표 : 박상증, 이선종

피항고인 :

1. 구근희
2. 구동휘
3. 구두희
4. 구분규
5. 구분웅
6. 구분혁
7. 구소연
8. 구소희
9. 구윤희
10. 구은성
11. 구은아
12. 구은정
13. 구자균
14. 구자명
15. 구자열
16. 구자엽
17. 구자용

- 18. 구자은
- 19. 구자홍
- 20. 구재희
- 21. 구지희
- 22. 구태회
- 23. 구평희
- 24. 구혜원
- 25. 구희나

### 항 고 취 지

위 피항고인들에 대한 2004 형제 6685 호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는 2006. 4. 24. 피고발인들에 대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고, 고발인은 2006. 4. 27.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는 바,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항고 이유

#### 1. 유상증자 관련 정보의 미공개정보 부인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첫번째로 엘지카드의 유상증자 실시 관련 정보는 미공개정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엘지카드가 2003. 10. 30. 발행주식수 37,000,000주의 추가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2003. 10. 31. 2003년도 3/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유상증자 실시와 관련된 정보는 미공개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항고인들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나 경영실적 공시와 피항고인들이 주식을 매각한 이후 엘지카드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유상증자 관련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고인이 고발한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고 불기소를 결정한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고인은 피항고인들이 이용한 엘지카드의 미공개정보는 피항고인들이 엘지카드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발표된 유상증자, 즉 2003. 10. 30. 37,000,000주의 신주발행이 아니라, 엘지카드의 부실확대로 인해 추진된 2003. 11. 17.의 추가적인 유상증자(7,000억원) 및 현금서비스 중단 등 부도위기, 그리고 채권단의 경영관리 가능성입니다.

먼저 엘지카드는 2003. 10. 30. 약 3,000억원(발행주식 총수 37,000,000주)에 이르는 유상증자만으로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위기 방지가 어렵게 되자 2004년 1/4분기까지 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 있음을 2003. 11. 17.에서야 비로소 공시를 했습니다.

엘지카드가 2003. 11. 17. 공시한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은 이미 발표한 3,000억원대의 유상증자의 2배가 넘는 규모이며, 완전히 다른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엘지카드가 2003. 10. 31. 발표한 경영실적과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엘지카드의 부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경영실태와 재무구조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엘지카드가 2003. 10. 30.에 결의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유동성위기 또는 카드회사의 기본적인 고객업무인 현금서비스 중단 등 부도위기를 막기 위한 유상증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2003. 11. 17. 발표된 추가 유상증자 계획의 의미나 중요성이 2003. 10. 30. 결의를 거쳐 다음날에 공시된 유상증자 계획 및 경영실적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은 당시 주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주가변동상황).

2003년 초반에 엘지카드의 주가는 20,000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2003. 5. 26. 엘지카드의 주가(증가 기준)는 한때 12,8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 이후 8월, 9월, 10월 초까지는 17,000원에서 20,000원을 오르내리다가 2003. 10. 31. 경영실적 발표와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12,000원의 하한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지카드의 주가는 2003. 10. 31. 이후 엘지카드 대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와 아직 부도위기까지 인식을 못한 시장의 판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11월 17일까지는 10월 31일 증가 12,050원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11월 14일의 증가는 13,100원이었습니다.

일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전일비	등락율	
2003-12-01	6390	7240	5890	7240	↑	940	14.92
2003-11-28	5620	6690	5550	6300	▲	420	7.14

2003-11-27	6200	6300	5550	5880	▼	420	-6.67
2003-11-26	7500	7750	6300	6300	↓	1110	-14.98
2003-11-25	7570	7660	6950	7410	▼	160	-2.11
2003-11-24	8300	8750	7570	7570	↓	1330	-14.94
2003-11-21	9200	9370	8720	8900	▲	400	4.71
2003-11-20	9110	9300	8200	8500	▼	1020	-10.71
2003-11-19	10500	10550	9450	9520	▼	1580	-14.23
2003-11-18	12200	12250	10800	11100	▼	1050	-8.64
2003-11-17	13150	13150	11800	12150	▼	950	-7.25
2003-11-14	13250	13350	12900	13100	▲	600	4.8
2003-11-13	14000	14050	12900	13600	▼	200	-1.45
2003-11-12	13800	14300	13700	13800	▲	200	1.47
2003-11-11	13400	13900	13300	13600	▲	150	1.12
2003-11-10	13950	14300	13300	13450	▼	450	-3.24
2003-11-07	12800	14250	12800	13900	▲	1350	10.76
2003-11-06	12200	13200	12200	12550	▲	250	2.03
2003-11-05	12700	12700	12000	12300	▼	600	-4.65
2003-11-04	11750	12950	11600	12900	▲	1600	14.16
2003-11-03	11000	11500	10750	11300	▼	750	-6.22
2003-10-31	12100	12600	12050	12050	↓	2100	-14.84
2003-10-30	14000	14250	13800	14150	▲	400	2.91
2003-10-29	14400	14600	13650	13750	▼	550	-3.85
2003-10-28	14000	14400	13600	14300	▲	200	1.42

반면 11월 17일 추가 자본확충 계획 및 2조원의 긴급자금 요청 사실이 알려지고 현금서비스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엘지카드의 주가는 11월 17일부터 다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000원에서 13,000원대를 오르내리던 엘지카드의 주가는 11월 17일 현금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그 다음날부터는 10,000원 밑으로 추락하게 되며 그 이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피항고인들이 엘지카드 주식을 매각하기 전인 2003년 10. 31. 엘지카드의 경영실적 및 유상증자 계획 발표로 엘지카드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항고인들이 엘지카드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오히려 더욱 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실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피항고인들의 엘지카드 주식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추가적인 유상증자의 필요성 등 엘지카드의 부도위기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내부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피항고인들의 주식보유	주가변동 (종가 - 원)	특징
2003.10.30. 유상증자	보유	14150	
2003.10.31. 경영실적발표	보유	12050	하한가
2003. 11. 12. 엘지그룹의 금감위에 대한 유동성 위기 설명	매각	13800	
2003. 11. 17. 추가 자본확충 계획	매각	12150	
2003. 11.17. 유상증자 공시	매각	12150	
2003. 11. 17. 외자유치 검토 공시	매각	12150	
2003. 11. 17. 엘지그룹 채권은행에 2조원 의 유동성 공급 요청	매각	12150	
2003. 11. 21. 엘지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매각	8900	
2003. 11. 24. 채권금융기관 의 경영관리 공시	-	7570	하한가
2003. 11. 25. 채권금융기관 으로부터 2조원 차입계약	-	7410	

2003. 10.30. 이후부터 2003. 11. 17.까지 엘지카드의 주가는 17.13%가 하락한 반면, 2003. 11. 17.부터 2003. 11. 24.까지는 무려 37.70%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폭의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피항고인들이 2003. 11. 17. 이후의 엘지카드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려 했었다는 것을 추론케 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2. 계열분리에 따른 내부자거래 가능성 없음의 판단 : 수사 미진, 사실 판단 착오 및 예단

검찰은 항고인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 주요 근거로 피항고인들이 엘지카드

의 대주주, 즉 엘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엘지카드 또는 엘지그룹 관계자들로부터 부도위기에 관한 내부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피항고인의 매우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계열분리와 관계 없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엘지그룹과 엘에스그룹**

피항고인들은 엘지그룹에서 분리된 엘에스그룹의 대주주로서, 이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엘지카드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이미 계열사의 지분정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계열분리 승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분리신청만으로는 그룹을 공동경영했던 친족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피항고인들인 엘에스그룹의 대주주들이 오래 전부터 엘지그룹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했으며 2003년도의 계열분리는 단순히 형식만을 바꾼 것이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에스그룹의 대주주들은 엘지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특히 엘에스그룹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구자홍 회장의 경우 엘지그룹의 핵심기업인 엘지전자의 CEO(대표이사)를 2003. 9. 30.까지 지냈습니다. 더구나 엘지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엘지카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당사자였던 강유식 본부장은 엘지전자의 이사로서 구자홍 회장이 퇴임할 때까지 같은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또한 피항고인인 구태회 엘에스그룹 명예회장은 아직도 엘지화학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따라서 이러한 피항고인들과 엘지그룹의 관계를 본다면 계열분리라는 사건을 이유로 엘지카드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공유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피항고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 **(2) 계열분리에 따른 지분처분의 당위성에 대한 오판**

피항고인들의 주장이나 검찰의 판단에는 피항고인들이 엘지그룹과 계열분리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엘에스그룹이 엘지그룹과 계열분리를 하더라도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참고자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이하 친족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되지만, 동일인이 친족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족회사는 그 기업집단에서 제외됩니다.

친족회사가 어느 한 기업집단으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상호 지분관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분리되는 친족회사의 주식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족회사의 지배자나 계열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회사의 경우 3%, 비상장회사의 경우 5% 미만으로 보유해야 합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엘에스그룹이 엘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신청서를 낸 당시 엘에스그룹의 지배주주이자 엘지그룹 지배주주의 친족이었던 피항고인들은 엘지카드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않았으며, 모두 처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열분리를 신청하면서도 2.64%의 엘지카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2003. 11. 7. 현재),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열분리 후에도 엘지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엘지는 엘에스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산전 주식을 2.9%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엘에스산전 주식을 2.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사업보고서).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항고인들이 엘지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위해서 엘지카드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계열분리 신청이라는 사실이 피항고인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항고인들의 엘지카드 주식매각 당시 현금서비스 중단 등 부도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미공개정보였으며, 계열분리와 상관없이 피항고인들은 엘지그룹의 최고경영진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열분리 여부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피항고인들이 계열분리 신청 이후에도 엘지그룹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항고인들의 주식을 관리했다고 하는 엘에스그룹의 임원과 피항고인 구자열의 진술만을 믿고 판단을 했으며, “현금서비스 중단 등 부도 발생위기”라는 문건의 입수 여부 내지 당시 피항고인들과 엘지그룹 경영진들과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 3. 주식매도 경위에 대한 수사 미진 및 수사의 형평성 상실

검찰은 피항고인들의 주장과 금융감독원의 조사의견에 따라 ‘엘지카드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검토한 결과 매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피항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불기소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3. 10. 중순경 발표된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카드사의 경영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엘지카드의 2대 주주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여 엘지카드의 주식매각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는 피항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엘지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회사의 문제점들은 인식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엘지카드가 현금서비스를 중단할 만큼 유동성위기 또는 부도위기에 몰렸는지는 2003. 11. 17.까지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엘지카드의 주주로서 유동성 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주식매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3. 10. 30. 공시된 엘지그룹 계열사들의 엘지카드 유상증자 참여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2003. 10. 31. 이후부터 11. 17.까지는 경영실적 발표 당시의 주가보다 더 높았습니다), 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피항고인들이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은 의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행위로 기소한 엘지카드의 2대주주, 엘지그룹의 임원 및 인척 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피항고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수사의 형평성을 잃었으며, 매우 미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엘지카드의 당시 비상근 임원이었던 황성진 사외이사의 경우 워버그핀커스 한국대표였습니다. 황성진 전 엘지카드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며 외국인 2대주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근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참고자료 신문기사).

엘지그룹 계열사인 엘지화학의 이아무개 임원의 경우에도 엘지카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자경 전 엘지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대한펄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최병민 회장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병민 회장은 구자경 전 엘지그룹 회장의 사위이지만, 그가 경영하는 대한펄프 주식회사는 엘지그룹의 계열사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최병민 회장도 미공개정보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엘지카드의 문제가 밝혀질 당시 엘지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였으며, 엘지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피항고인들이 엘지그룹에서 작성된 “현금서비스 중단 등 부도 발생위기”라는 내부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최병민 회장 기소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4. 결론

검찰은 항고인의 고발에 대해서 계열분리의 의미나 실질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 추정과 선입견으로 피항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같은 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비교할 때 항고인의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의 형평성이 현저히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률판단의 오해 또는 미비가 있었습니다.

이번 항고인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방법

1. 엘지카드 2003.11.17. 공시
2. 유가증권시장본부 통계 엘지카드 시세
3. 엘지전자 2003.9.30 분기보고서 중 임원현황
4. Kisline 인물검색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6. 주식회사 엘지 2006.3.31 사업보고서 중 타법인 출자
7. 동아일보 2006.4.18 기사
8. 대한펄프 2003.9.30 분기보고서 중 회사의 연혁

2005.5.25 항고인 이수정 박근용

서울고등검찰청 귀중